##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4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김기현・이달희・김상욱

인요한 · 서천호 · 서일준

박형수 · 박성훈 · 곽규택

김 건 · 박성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 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 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 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 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①
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국민기</u>
	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
	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u>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u>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